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관련 감면 해설(Ⅱ)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 Ⅲ. 기업구조조정 유형별 감면범위

### 10.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모두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구분 실익

단순분할이거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성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분할 또는 소멸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등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회사를 상법 제530조의 2,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부동산을 분할되는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인바, 분할에 의하여 성립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인가?

상법 제530조의 2 및 제5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을 교부하는 것이다.

즉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상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취득하는 등기시에는 부동산을 출자하는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 소속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15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출자회사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20이 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비교]

구 분	물적분할	인적분할
근거규정(상법)	제530조의 12	제530조의 2, 제530조의 4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등록세 세율	1,000분의 30	1,000분의 15

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업분할에 따른 지방세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2) 법인분할과 등록세 중과세 문제

상법 제530조의 2 및 제5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은 종전의 분할되는 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분할설립의 경우 종전에 없는 새로운 법인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합병되거나 신설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없었던 지점이 발생한 것

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의 합병으로 신설합병이 되거나 흡수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 자리에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할 것인가?

① 법인의 합병이란 2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의 되어 청산절차를 그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인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합병의 시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을 하였을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합병 전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합병관련규정을 볼 때에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형태로서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는 인격승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②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742, 1993.

5. 25.)에서와 같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부터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 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업양수도 방식이 아닌 법인의 합병방식으로 종전 소멸 법인의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법인분할과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

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행자부 세정-547, 2004. 2. 11)

[사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등 감면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분할 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갑법인)이 ①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레미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③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고 ④분할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법인세법제4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등이 면제됨(행자부 세정-1080, 2004. 5. 8)

※법인세법제46조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사례]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적용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624, 2004. 8. 19)

[사례] 법인분할에 따른 매각시

감면의 정당한 사유 판단

법인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행자부 세정-4730, 2004. 12. 24)

[사례] 법인분할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골프장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5년 이상된 법인이 골프장사업부분을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517, 2003. 10. 15.).

[사례] 기업분할과 회원권의 취득세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분할로 인하여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630, 2003. 7. 28.).

[사례] 분할법인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법인의 범위를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의 자산을 양수받아 이를 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85, 2003. 6. 16.).

[사례] 법인분할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법상 제11절(회사의 분할) 제5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합병의 경우도 분할의 일종으로 보는 것임(행자부 세정-131, 2003. 6. 10.).

[사례] 기업분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재경부 법인 46012-146, 2001. 8.

28. 참조)하는 것이므로 분할계획서상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411, 2003. 5. 19.).

[사례] 법인분할과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을 분할하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분할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분의 경우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344, 2003. 5. 1.).

-법인의 분할의 경우 종전법인의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하여야 감면대상이나 분할 이후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례] 물적분할과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제요건 중 한 가지 요건으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록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1222, 2002. 12. 24.).

11.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고정자산의 종류가 같은 것임

을 의미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건축물·사업용자산(차량·운반구 등)을 말하며, 여기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이 되는 특수관계자 외의 다른 법인이 2년 이상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내국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사례]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법 제50조 제1항에 말하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고정자산의 종류가 같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174, 2002. 12. 10.).

12.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여기서 첫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권고, 요구 또는 명령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의 양도와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한한다.

둘째, 계약이전결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하는바,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이전결정이 아닌 신탁재산의 이전결정은 이미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계약이전명령 이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

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라면 계약이전결정서상 이전대상재산에 한해 취득세감면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74, 2003. 1. 27.).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접사용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을 귀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히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30-367, 2000. 3. 9.).

[사례] 조특법상 정리금융기관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나, 귀문의 경우 정리금융기관 등이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3, 1999. 10. 16.).

[사례] 신탁이전의 경우 감면대상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됨. 그러나 신탁관련 자산에 대하여 인수은행이 계약이전결정과 다른 별도의 계약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497, 1998. 11. 23.).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인 경우라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나,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아829, 1998. 11. 10.).

### 13. 유동화전문회사의 관리처분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②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③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 (1) 자산유동화의 범위

여기서 「자산유동화」라 함은 통상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호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저당권이전 및 경매 신청·가압류 가처분·가등기의 범위  
여기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자산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제시되자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참여·경락 받을 경우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부채권으로 변제하고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인가?

(제1설)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제2설)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견해가 있는바, 이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등록세감면요건을 분석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6. 12. 31.까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 ①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②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의 범위에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전세권 등도 포함되며, 유동화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상기의 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형태

이기 때문에 바로 감면』됨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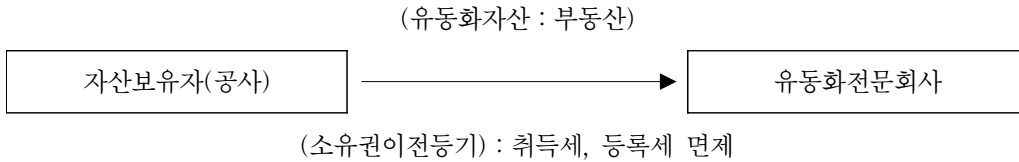
그런데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양수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 저당권 등 기타 재산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영·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채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대물변제받거나, 채권 등 대신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의 ②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형태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유권해석(금감 41214-38, 1999. 2. 4.)도 같은 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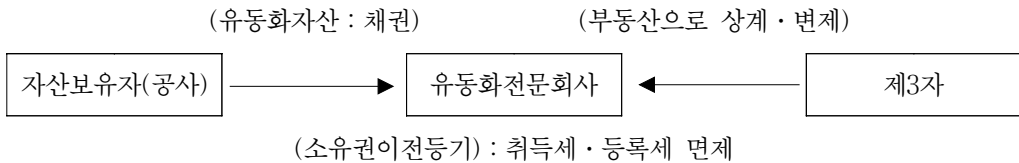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3.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채권자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관리·운영·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 등)을 법원의 경매에 의거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기의 ②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범위

[①과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②와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985, 2003. 8. 28.).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등록세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전환사채를 양도받고 당해 전환사채의 보전이나 향후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동화자산의 관리 측면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전환사채의 연대보증인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됨(행자부 세정 13430-234, 2003. 3. 28.).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부동산을 양수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임(행자부 세정 13407-1170, 2002. 12.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을 양수하고 동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에 기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함(행자부 세정 13407-188, 2002. 2. 26.).

[사례] 선박의 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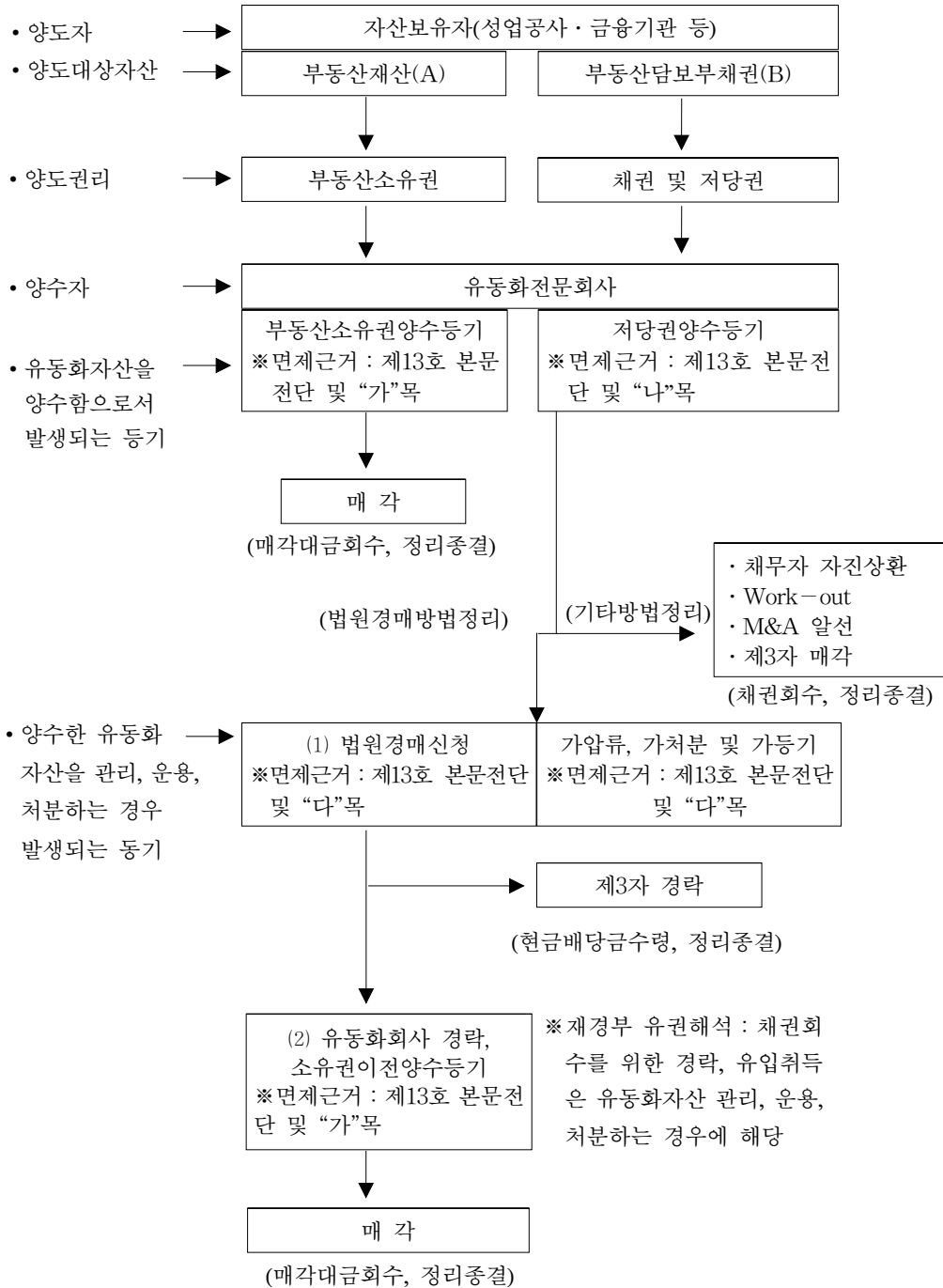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목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취득세 등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박을 면제대상이 아님(감심 제2001-132~133호, 2001.11.13.).

[사례] 자산보유자로부터의 취득 여부 판단과 감면 여부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업무처리흐름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자산양도>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12.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채권자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 등)을 법원의 경매에 의거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감면 대상에 해당함(행자부 세정 13430-1219, 2000.10.19.).

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614, 2000.5.13.).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으나, 등록세의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됨(행자부 세정 13407-931, 1999. 7. 27.).

#### 14.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함)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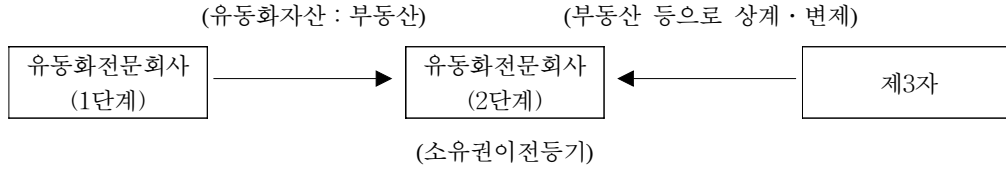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제39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나,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부분은 2004. 12. 31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2단계)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가?

먼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여기서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사전적인 의미도 볼 수 있으므로 사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실상의 자산보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볼 경우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2단계)가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사업을 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중 「신탁회사(1단계)가 신탁회사(2단계)」로 유동화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탁회사 이외의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1단계)가 유동화전문회사(2단계)로 이전하는 경우 실제상 자산보유자이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자산보유자로 명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적용이 안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형평에 위배되며, 또한 유동화전문회사간의 유동화자산 이전을 통한 행위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행위로 보고 있음에도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신탁회사 이외의 유동화전문회사간의 유동화자산이전은 「자산유동화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대한 재경부의 해석 견해도 특수목적을 위한 수단인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유동화자산(채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다음,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행자부세정 13407-692, 2001. 6. 2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



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606, 2001. 6. 5.).

[사례] 감면대상의 범위 판단

민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라 함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됨(행자부 세정 13407-678, 2001. 6. 20.).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갑)가 자산보유자(을 : 내국법인)로부터 유동화자산(공사대금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할 목적으로 내국법인(병)

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53, 2001. 5. 23.).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376, 2001. 4. 6.).

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614, 2000.5. 13.).

[사례]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위탁자인 기업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289, 2001. 3. 19.).

[사례]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이전시  
감면 판단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적 지위는 자산보유자이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도관(conduit)에 불과함. 다만,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자산의 이전(transfer) 등에 대해 조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자산의 유동성(liquidity)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도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와 동등하게 등록세를 면제하여 추가비용이 없이 자산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재경부 중권 41290-95, 2001. 3. 26.).

[사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감면범위 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194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관련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아닌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14, 2001. 1. 5.).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물건을 유입하는 경우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그 부동산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222, 1999. 10. 6.).

[사례] 자산유동화회사의 부동산이전등기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으나, 등록세의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登記 등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됨(행자부 세정 13407-931, 1999. 7. 27.).

[사례] 자산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도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되므로,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650, 1999. 5. 31.).

[사례]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자산이전형태 다수의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나의 자산유

동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의 인수와 부동산의 유입행위는 동 사항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재경부 금정 4140-38, 1999. 2. 4.).

### 15.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따른登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登記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리처분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6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登記에 대

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 가. 해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다. 해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 가. 해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다. 해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와 그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

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바, 여기서 제1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 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 18.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출자전환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하고,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규정은 2003. 12. 31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출자전환시점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

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출자전환시점은 실제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날, 즉 출자전환 결의에 의하여 출자자에 대한 주식교부를 한 날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날 중 앞선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행자부 세정 13430-30, 2003. 1. 11.).

[사례] 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감면대상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한 경우는 등록세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983, 2002. 10. 16.).

[사례] 금융기관채무출자시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주)○○제지]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에 의거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였고 이 전환사채도

전환시까지의 일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므로 (주)○○제지의 전환사채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전환할 경우 그 출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891, 2002. 9. 21.).

### 19.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등 출자에 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관리처분 등에 따른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채결자산을 동법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21.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부분은 2003. 12. 31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회사정리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채권금융기관이 일부만을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835, 2002. 9. 6.).

## 2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부분은 2003. 12. 31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와 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여기서 제1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 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 24.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

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유동화회사의 감면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 2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5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1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와 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바, 여기서 제1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 26.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

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 2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감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의 범위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함)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감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함)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 30. 일반택시 등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 31.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 32.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등 부동산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6년12월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세는 다음의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200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정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



자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2.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의 대출
3.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 및 동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 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사모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등록세감면 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귀사 의견 중 「갑설」(설립등기는 중과세 제외)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07-640, 2002. 7. 9.).

[사례] 구조조정과 등록세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설립등기가 아닌 증자의 경우에는 등록세중과 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116, 2001. 7. 23.).

- 이 해석은 “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단서가 개정되기 이전인 2004. 12. 31까지 적용되는 해석임.

### 3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 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회사주식을 취득하는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소유지분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하여 당해 비상장법인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라면 당해 지주회사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1697, 2003. 10. 2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구상호신용금고법(2001. 12. 31.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 전의 것)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분처분명령을 받음에 따라 당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

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070, 2003. 9. 5.).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포함 여부 판단

주식발행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연부취득중인 상태에서 당해 법인장부상에 유형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 28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5 규정에 의해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귀도 의견 중 「갑설」(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행자부 세정-733, 2003. 8. 6.).

(1)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와의 감면관계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비과세·감면할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므로 이때 비과세·감면의 판단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검토대상이다.

①견해는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⑤)하여야 비과세·감면되기 때문에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은 사문화되어 무의미해지고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감면되는 물건(예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만 비과세·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취득시 감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취득시 감면 등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②견해는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이 의미가 있게 되고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시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비과세·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①견해(과점주주 기준)와 ②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①견해(과점주주 기준)는 납세의무성립은 과점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감면대상 여부도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조세법상 과세요건 판단 등이 명확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간주취득의 의미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는데 비하여, ②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등에 간주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비록 대법원 판결이 구법에 관한 판단이라도 판례와 같이 운영하되,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감면처분을 판단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정할 수가 없으나, 판례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는 비과세·감면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과세권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추정되는 것이다.

(2) 과점주주의 감면대상과세물건의 범위  
과점주주의 취득은 발행법인의 주식을 5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의제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취득의 주체는 주식발행법인이지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첫째,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취득물건이 취득세면세점(과표가 50만원) 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 :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713, 1994. 9. 28. 참조).

둘째,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주식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IV. 지방세 감면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

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 구외 기숙사에 대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구외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사원용 아파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432, 2003. 10. 8.).

[사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관련 지방세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이에 부수되는 수송·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84, 2003. 4. 17.).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감면범위로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수시설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범위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자분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라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며 감면액은 당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산출세액에 지방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유상증자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총자본금에서 지방세감면대상이 되는 유상증자분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이와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면대상인 등록세를 기납부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감면분은 과오납으로 환부대상이 됨.

2.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자분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라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며 감면액은 증자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세액에 지방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3.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자분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라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에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04, 2002. 5. 30.).